

2020년도 제13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

I. 회의 개요

- 일 자 : 2020. 7. 14.(화요일)
- 방 법 : 온라인심의
- 참 석 자 :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
 - 심의위원 : 김경숙 위원(분과위원장), 박성호 위원, 박정인 위원, 오영주 위원
-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

〈의결안건〉 ※ 안건 검토 :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

-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,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

II. 회의내용 및 결과

-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,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
 - 주요내용: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·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37건(안건번호 제2020-70036호~70135호)
 - 회의결과: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·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고,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

Ⅲ. 주요내용

- A 위원 : 본 사건은 웹하드사이트(♥♥♥♥♥♥♥♥, ◆◆◆◆◆ 등)에 불법복제물(방송, 영화)들을 불법 공중송신한 사건으로 당해 복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해당이용자들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의견임
- B 위원 : 이번에 불법 복제 전송이 문제된 심의안건들은 방송 및 영화 콘텐츠에 관한 것들로 그 중에는 (방송) 예스터데이를 노래하며 (2020), (영화) 블러드샷 (2020), (영화) 언더워터 (2020)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이러한 사안들은 모두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이라고 판단됩니다. 그러한 점에서 검토보고서의 원안대로 모두 시정권고 가결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
- C 위원 : 금번 심의대상 안건은 15개 온라인 서비스의 이용자들이 게시한 137건의 복제물에 대한 것으로서, 안건번호 제2020-70036호~70135호(순번 1번~100번)는 2020년에 상영 또는 방송된 최신 영상물들로서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저작물에 해당하여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들이라 할 수 있음. 그러나, 이들 영상물들을 복제·전송을 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들이 영리목적의 웹하드 혹은 모바일 웹하드 사이트에 사전허락없이 게시한 결과, 저작권자가 얻어야 할 경제적 수익을 박탈함으로써 합법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음. 또한 이들 영상물들 중 일본 애니메이션과 해외 영화들은 베른협약의 내국민대우주의와 보호국법주의에 따라 우리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음. 이에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제133조의3에 근거하여 온라인을 통한 불법복제물의 유통이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된다는 측면에서 복제 전송의 중단과 삭제의 시정권고를 가결함. 다만, 이미 삭제된 게시물에 대해

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이 타당할 것임.

- D 위원 : 금번 심의안건은 불법 복제한 영상저작물(영화, 방송)을 유헤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저작권법 제133조의 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. 다만,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.

2020년 제137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록이
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20. 7. 23.

분과위원장 김경숙

위원 박성호

위원 박정인

위원 오영주